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98
----------	-------

발의연월일 : 2025. 10. 10.

발 의 자 : 김승원 · 임호선 · 이광희
김남희 · 박상혁 · 민병덕
박수현 · 이원택 · 권칠승
박균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대리운전서비스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국민의 실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은 생활형 교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독립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국민 안전과 소비자 보호, 운전자의 생계 및 복지, 공정한 사업 질서 확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운전자 인증 및 안전관리 부재,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의 모호성, 고객정보 유출, 중복 호출 등 플랫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최근 대리운전 종사자가 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등 대리운전 종사자의 법적 지위 및 사회보장 제도 적용과 관련한 정책·입법 논의가 충분히 진행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체계와 관리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증가함.

이에 대리운전서비스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운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상호부조 기반 공제조합의 제도화로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운전자 인증 및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및 범죄의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대리운전서비스산업 전반에 제도적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부여하고 미래지향적 산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대리운전서비스업의 관리 체계 및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리운전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대리운전서비스, 대리운전서비스업, 대리운전자 및 대리운전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대리운전서비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리운전서비스업에 대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리운전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바. 대리운전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사.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안 제12조).

아. 대리운전사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5조).

자. 대리운전사업자는 요금 등을 포함한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6조).

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리운전서비스의 품질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대리운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감독 하도록 함(제18조).

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리운전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파.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운전서비스업의 관리 체계 및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리운전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서비스”란 자동차의 사용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직접 운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대리운전서비스업”이란 대리운전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리운전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대리운전자”란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대리운전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대리운전서비스업의 등록 및 관리

제3조(대리운전서비스업의 등록 등) ① 대리운전서비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사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리운전서비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는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법인으로서는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

7.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서비스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리운전서비스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리운전사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기반 호출·배차 시스템 및 사고 대응 체계의 구축 등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수사업자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운전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인증을 받으려는 대리운전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대리운전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

다)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대리운전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대리운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우수사업자 인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6항에 따른 조사·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7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장 종사자 보호 및 소비자 안전

제9조(공제조합 설립 등) ① 대리운전사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대리운전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사업
2.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3. 대리운전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사업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
5.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의 가입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 사항, 운영, 이사회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공제조합이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⑧ 제7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⑨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리운전보험등의 가입 등) ① 대리운전사업자나 대리운전자는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의 대리운전으로 이용자, 대리운전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와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이나 본인에 대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및 공제(이하 “대리운전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및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리운전사업자가 대리운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대리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1조(대리운전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대리운전사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한 경우에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대리운전사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제12조(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대리운전서비스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할 것
2.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제14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것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리운전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대리운전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리운전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대리운전사업자는 대리운전자 또는 대리운전자가 되려는 자(이하 “대리운전자등”이라 한다)가 제3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대리운전자등과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대리운전사업자는 대리운전자등이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운전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대리운전사업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대리운전자의 교육 등) ① 대리운전자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대리운전서비스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대리운전서비스의 자세 및 대리운전서비스 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대리운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자등이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대리운전자등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대리운전자 신고 등) ① 대리운전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리운전사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리운전자의 신고필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의 교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대리운전약관) ① 대리운전사업자는 운송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운전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대리운전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대리운전서비스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운전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대리운전약관의 변경

2. 요금 산정 방식의 개선

3.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자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대리운전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장 보칙

제18조(대리운전서비스업의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리운전서비스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제19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리운전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사업자의 장부, 서류, 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청문)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사업자 등록의 취소

2. 제8조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

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서비스업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대리운전서비스업을 경영한 자
3. 제5조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 중에 대리운전서비스업을 한 자

② 제10조에 따라 대리운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자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운전서비스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대리운전에 관한 사업등록을 하고 대리

운전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리운전서비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대리운전자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